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-21호

우편법 시행규칙 제85조제2호가목 및 나목, 제86조제6항 및 제7항, 제8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고시한 「창구접수 및 방문접수 소포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요건 등에 관한 고시(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2-29호)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
2016년 6월 13일

우정사업본부장

창구접수 및 방문접수 소포우편물의 감액요건 등에 관한 고시

1. 요금감액 요건

가. 감액대상 : 우편요금(부가취급수수료 제외)

나. 감액접수 대상관서 : 전국 모든 우편관서(우편취급국 포함)

2. 요금감액 범위

구 분		5%	10%	15%
창구접수	요금즉납	2개 이상	10개 이상	50개 이상
	요금후납	50개 이상	250개 이상	500개 이상
방문접수	요금즉납	-	10개 이상	50개 이상

부칙

이 고시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,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2-29호(2012년 7월 1일)는 폐지한다.